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윤종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2. 3.

발 의 자 : 윤종호, 김성현, 김상조,
김수민, 김익수, 김정곤, 김정미,
김재상, 김춘남, 김태근, 박교상,
박세진, 박주연, 손홍섭, 윤영철,
이명희, 이수태, 임춘구, 정하영,
황경환

1. 제안이유

- 가. 구미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 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공사신고 센터를 설치하여 건전한 공사 관행 정착은 물론 건설공사 관계자의 경각심 고취로 부실공사를 원천봉쇄하고,
- 나.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구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제재를 가하므로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계기를 만들 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마련 (안 제4조)
- 나. 건설공사의 부실신고에 따른 부실측정 (안 제5조)
- 다.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 (안 제6조)
- 라.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 실시 (안 제7조)
- 마. 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 및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안 제8 ~제9조)
- 바. 부실공사 신고 처리, 심의, 조치사항 등(안 제10조 ~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건설사업기본법」 제2조제4조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10호, 제21조의4, 제24조, 제26조의2, 제35조

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1

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별표4, 별표10

마. 「구미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4. 조례안 : 붙임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10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실공사”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1,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별표 4, 별표 10에 따른 부실별점 측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부실별점”이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5호 가목의 부실별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가 발주하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의 공사에 한한다.

제4조(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관리 하고,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측정, 민원제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시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① 시장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 설치)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처리를 위하여 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하고, 전담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실공사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전담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제8조에 따른 전담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모사전송(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전담부서는 제9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을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거 발주부서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관계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현장 관리와 우선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제11조(부실공사 심의)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발주부서에서 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1. 부실공사의 여부 결정
2. 그 밖에 민원 제기 등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12조(공사감독의 책임) 시장은 감독업무 수행공무원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 정도에 따라 「구미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판정결과의 조치) 발주부서는 부실공사 판정결과에 따라 설계사·시공사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관계기관에 행정적인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징구)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하는 공사 계약시 계약상대자에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실공사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부 실 공 사 장	사업명		현장 위치	
	공 종		발생일자	년 월 일
부실공사 내 용 (구체적으로 명시)				
증빙서류				
비 고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구 미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 사 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모든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하겠음을 서약하며, 만약
부실공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0000. . .

○○○회사 대표 ○○○(인)

구 미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정의)

10. "시공감리"란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검측 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의4(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主務官廳)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 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타당성을 조사할 때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별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설계 등 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감리전문회사(「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자·감리원 또는 건축사
 -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별점을 받은 자에게는 그 별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1.9.16>
 - ③ 제1항에 따라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별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별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별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별점의 공개 대상·방법·시기·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품질관리자"라 한다)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였거나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기준 및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방법·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품질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품질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⑧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신고, 명의대여 금지,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제1항제3호·제5호·제7호·제9호·제1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26조의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방법 및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한 건설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종합보고서를 그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및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⑧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⑨ 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1]

감리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제115조 관련)

1. 일반 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늘릴 수 있되,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기간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법 제33조제항제1호			
1) 주요 구조부의 부실시공으로 시설물이 붕괴되어 사망 등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업무정지 24개월	-	-
2) 주요 구조부가 부실시공되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12개월	-	-
3) 인근의 주요 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일반인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9개월	-
나.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 부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경우	법 제33조제항제2호			

1)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 부재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성을 떨어뜨리게 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4개월	업무 정지 4개월
2)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 부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다.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	법 제33조제 항제3호			
1)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2)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3개월
라.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 제33조제 항제4호			
1) 다수의 인명피해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4개월	업무 정지 4개월
2)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마. 건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거나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법 제33조제 항제5호			
1)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함으로써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내용기간을 단축하게 한 경우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3개월
2)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바.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을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는 것을 묵인한 경우	법 제33조제 항제6호			
1)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을 검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2)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는 것을 묵인한 경우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감리보고서에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 검사 시험 등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33조제항제7호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아. 법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빌려 준 경우	법 제33조제항제8호	업무 정지 24개월	-	-
자. 책임감리등을 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33조제항제9호			
1)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거나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업무 정지 24개월	-	-
2)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초과 3퍼센트 이하이거나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업무 정지 12개월	-	-
3)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인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9개월	-
차.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33조제항제9호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또는 유사한 행위의 정지 기간 준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늘릴 수 있되,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일반인에게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 기준

위반 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법 제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경우	법 제6조의4 제1항제1호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2개 월	-	-
나. 법 제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6조의4 제1항제2호	업무 정지 12개 월	-	-	-
다.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가 현저하게 손괴(損壞)되었거나 일반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또는 시설물의 내구성(耐久性)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경우	법 제6조의4 제1항제3호				

1)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가 붕괴되어 사망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업무 정지 8개월	업무 정지 8개월	-	-
2) 주요 구조부가 붕괴되거나 구조의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생기게 한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6개월	-	-
3)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근 주요 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업무 정지 4개월	업무 정지 4개월	업무 정지 4개월	-
4) 시공관리의 소홀로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경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4개월
라. 지방기준(示方基準)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규격의 건설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경우	법 제6조의4 제1항제4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마.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조의4 제1항제5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조의4 제1항제6호				
1) 품질시험을 제38조에 따른 품질시험기준에 따른 시험빈도의 2분의 1 이상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과를 조작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3개월
2)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성과를 조작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3개월
3) 시험횟수, 시험실면적 및 시험·검사요원이 제38조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여 시정지시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사.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조의4 제1항제7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아. 법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6조의4 제1항제8호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자.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받고도 시공을 계속한 경우	법 제6조의4 제1항제9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차. 공사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법 제6조의4 제1항제10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카.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 등에 따라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시공상태에 대한 확인이나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을 한 경우	법 제6조의4 제1항제11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을 무단이탈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생기게 한 경우	법 제6조의4 제1항제12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6조의4 제1항제13호				
1)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거나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업무 정지 24개월	-	-	-
2)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초과 3퍼센트 이하이거나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업무 정지 12개월	-	-	-
3)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인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6개월	-	-
하.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의4 제1항제4호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정지기간 준용			

[별표 4]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 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늘릴 수 있되,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일반인에게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 기준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설계 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손괴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법 제 20조의 4제1항제 1호				
1) 주요 구조부가 손괴되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로 일반인에게 현저하게 위해를 끼친 경우		업무정지 12개월	-	-	-
2) 주요 구조부가 붕괴되는 등 손괴를 가져오거나 구조의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생기게 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	-
3) 주요 구조부가 손괴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일반인에게 현저하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 보완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나. 시설물의 구조계산 (構造計算) 등을 소홀히 하여 주요 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켰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현저한 경우	법 제 20조의 4제1항제 2호				
1) 주요 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킨 경우		업무 정지 4개월 경고	업무 정지 4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4개월 업무 정지 2개월	- 업무 정지 2개월
2) 주요 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 보완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전조사 등을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킨 경우	법 제 20조의 4제1항제 3호				
1) 공사비가 당초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여 발주청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2) 공사비가 당초보다 증가하여 발주청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현장의 시공여건을 무시하고 설계를 함으로써 주요구조물의 시공위치를 설계대로 시공할 수 없게 설계한 경우					
라. 건설공사에 사용될 자재·재료 등의 품질기준·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 제 20조의 4제1항제 4호				
1) 주요 구조부가 부실하게 시공되어 구조의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생기게 한 경우		업무 정지 2개월 경고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1개월
2)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마. 법 제 21조의 5제 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 20조의 4제1항제 5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바. 법 제 23조의 2제 1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1) 설계도면·공사시방서 등을 기준에 맞도록 상세하게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현장기술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게 하여 주요 구조부의 상당 부분을 잘못 시공하게 한 경우 2)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 보완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 20조의 4제 1항제 6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사. 설계기술·공법을 잘못 적용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 타당성을 조사할 때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1) 고의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된 경우 2)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된 경우 3) 고의로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법 제 20조의 4제 1항제 7호 법 제 20조의 4제 1항제 8호 법 제 20조의 4제 1항제 9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정지기간 준용			
		업무 정지 12개월	-	-	-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6개월	-	-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3개월

비 고: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의 손괴”란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에 발생한 허용치 이상의 균열 또는 붕괴 등 중대한 결함을 말한다.

[별표 10]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제28조제1항 관련)

1. 용어의 정의

“부실벌점”이란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설계 등 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및 감리전문회사(이하 이 표에서 “업체”라 한다)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감리원 또는 건축사(이하 이 표에서 “건설기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를 허가·인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이 제5호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2. 부실벌점의 적용대상

측정기관은 제5호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서 부실내용을 정한 경우 및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부실벌점을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건설공사의 부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6조의4에 따른 업무정지

나. 법 제20조의4에 따른 업무정지

다. 법 제30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라. 법 제33조에 따른 업무정지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바. 「주택법」 제13조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설계 등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설계 등 용역업자로 한정한다)

아.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자.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준하는 행정처분

3. 부실벌점의 산정방법

가. 해당 반기에 동일업체의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업체가 해당 공사(용역)에서 받은 부실벌점의 합을 해당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 부실벌점을 해당 업체의 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나. 누계평균부실벌점은 해당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등의 최근 2년간의 평균부실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다.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시 지적된 내용과 제5호의 주요 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의 벌점을 부과한다.

4. 부실벌점의 관리 및 적용

가. 업체 및 건설기술자등에 대한 누계평균부실벌점은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를 할 때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하는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해당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감점한다. 다만, 이 기준을 적용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누계평균부실벌점	감점되는 점수(점)
1점 이상 2점 미만	0.2
2점 이상 5점 미만	0.5
5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15점 미만	2
15점 이상 20점 미만	3
20점 이상	5

나. 누계평균부실벌점은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다. 측정기관은 부실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건설기술자등의 확인을 받아 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요 부실내용을 기준으로 부실벌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벌점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해당 업체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자등이 부실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벌점을 책정할 수 있다.

라. 측정기관은 다목에 따라 부실벌점의 책정 결과를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부실벌점의 부과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는 측정기관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관계 직원이 하여야 한다.

마. 측정기관은 라목에 따른 검토결과 부실사실의 확인과 부실벌점의 책정에 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부실벌점의 책정 결과를 정정한 후 라목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바. 건설기술자등이 근무하는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부실벌점은 승계된다.

5. 부실벌점의 측정기준

부실벌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개별 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자등에게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등에 대한 부실벌점 측정기준

번 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1.1	○토공사의 부실 -설계도서(관련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다른 기초굴착과 절토·성토 등으로 인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기초굴착 및 절토·성토 등을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또는 3 1
1.2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한 경우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3 1 또는 2 1
1.3	○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 -주요 구조부(제72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별표 10에서 같다)의 철근 노출이 발생한 경우 -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1㎡ 이상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조치(재료분리 위치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수·보강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를 하지 않은 경우	3 1
1.4	○철근의 배근·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용접·시공상태의 불량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부재당 보수·보강이 3곳 이상 필요한 경우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기타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3 2 1

1.5	○배수상태의 불량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을 상실한 경우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배수구의 관리가 불량한 경우	3 2 1
1.6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누수가 발생하거나 방수구조물에서 방수면적의 1/2 이상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방수구조물의 시공불량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1 또는 2
1.8	○시공단계별로 감리원(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은 시공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감리원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2 또는 3 1
1.9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타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2 1
1.10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감리원으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받은 후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한 경우	2 또는 3 1
1.12	○가설시설물(동바리·비계 또는 거푸집 등) 설치상태의 불량 -가설시설물의 설치불량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바리·비계 또는 거푸집 등 가설시설물의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작성하지 않거나 그 설치의 불량으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3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정기안전점검의 결과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4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실시가 미흡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5	○시험실의 규모·시험장비 또는 품질관리자 확보의 미흡 -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시험실·장비나 품질관리자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를 사용한 경우	3 2 1
1.16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관리상태의 불량 -기준에 미달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 -건설기계·기구의 설치 관련 기준에 미달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자재의 보관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경우	3 2 1
1.17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거푸집 해체시기 및 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슬럼프테스트, 염분함유량시험, 압축강도시험 또는 양생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생산·도착시간 및 타설완료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8	○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플랜트를 포함한다) 현장관리상태의 불량 -계량장치를 검정하지 않은 경우, 골재를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지 않은 경우, 자동기록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기록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또는 골재관리상태가 미흡하거나 아스콘의 생산온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품질시험이 적정하지 않거나 장비결함사항을 방치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9	○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상태 불량 -시방기준에 맞지 않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한 경우 -현장다짐밀도 및 포장두께가 부족한 경우 -혼합물온도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평탄성 측정 결과 시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
1.20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른 시공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기타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기타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2 1
1.21	○계측관리의 불량 -계측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측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특별시방서의 규정상 계측횟수가 미달하거나 잘못 계측한 경우 -측정기한이 초과하는 등 계측관리가 소홀한 경우	3 2 1

나.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 측정기준

번 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2.1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기타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 소홀로 인하여 보완 시공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확인검측의 누락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2.2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 시공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기타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 시공이 필요한 경우	1
2.3	○기성 및 예비 준공검사의 소홀	
	-검사 후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검사 후 부분 보완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검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2.4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확인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미지정기관의 정기안전 점검이나 정기안전점검 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3
	-건설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기간 내 미 실시 등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2
2.5	○설계변경사항 검토·확인 소홀	
	-설계도서의 확인 잘못으로 시공 후 주요 구조부 또는 전체 공사비의 10% 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설계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2
	-설계변경사항의 검토 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2.6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소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잘못으로 보완 시공이 필요 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또는 3
	-설계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 변경승인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또는 2
2.7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불철저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가 시험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시정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불성실하게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시험실·장비나 품질관리자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하였는데도 시정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품질시험 중 일부 종목을 누락하거나 시험횟수가 부족한 경우,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장비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시정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
2.8	○사용자재 적합성의 검토·확인 소홀	
	-레미콘·철근 등 주요자재 품질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2
	-기타자재의 품질확인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
2.9	○시공사 제출서류의 검토 소홀 및 처리 지연	
	-제출서류 처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3
	-제출서류 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제출서류 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2.10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 따른 기록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2
2.11	○감리업무의 소홀 등	
	-감리원의 자격미달 및 인원부족이 발생한 경우 (감리전문회사만 해당한다)	2 또는 3
	-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감리원만 해당한다)	1 또는 2
2.1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제출된 감리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감리전문회사만 해당한다)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 50% 이상의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 (제 8조 제 2항 각 호의 사유로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또는 3
	-같은 분야의 감리원을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1 또는 2
2.13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환경오염(수질오염, 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또는 3
	-공사수행과정에서 토사유실, 침수 등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또는 2
2.14	○ 지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2
2.15	○ 가교 등 주요 가설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2 또는 3
2.16	○기술지원감리원의 현장시공실태 점검의 소홀	
	- 기술지원감리업무 수행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 59조 제 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2회 이상 미달하여 기술지도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
	- 기술지원감리업무 수행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 59조 제 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2회 이상 미달한 경우	
2.17	○건설공사 목적물의 하자 발생	
	-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3회 이상 하자(「건설산업기본법」 제 82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른 하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가 발생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88조에 따른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되는 경우 (감리전문회사만 해당한다)	3

	-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감리전문회사만 해당한다)	1 또는 2
--	--	--------

다. 설계·설계감리 등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 측정기준

번 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3.1	○각종 현장 사전조사 또는 관계 기관 협의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나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했지만 조사범위의 선정 등이 부실한 경우 -지역여론의 수렴 등이 부족하여 공사중 민원이 발생한 경우	3 2 1
3.2	○토질·기초조사의 잘못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링 등 토질·기초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토질·기초조사의 잘못으로 공법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미한 설계 변경사유가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3 2 1
3.3	○현장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주요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기타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측량성과분석이 미흡한 경우	3 2 1
3.4	○구조·수리계산의 잘못이나 신기술 또는 신공법에 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구조물 보완시공의 사례 발생 -주요 구조물의 전면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주요 구조물의 부분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기타 구조물의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3 2 1
3.5	○수량 및 공사비(설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의 잘못 -총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 -총공사비가 5% 이상 변경된 경우 -토공·배수공 등 공종별 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총공사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공종으로 한정한다)	3 2 1

3.6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설계도서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관련 기준에 미달한 경우 -설계도서간에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또는 해당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또는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않아 현장의 실정과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수행이 곤란한 경우 -상세도면의 작성이 미흡하여 시공이 곤란한 경우,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이 없는 경우 또는 인용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내용이 누락된 경우	3 2 1
3.7	○자재 선정의 잘못으로 인한 공사의 부실 초래 -주요 자재 품질·규격의 적합성 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3
3.8	○용역 참여기술자 업무관리의 소홀 -참여예정기술자가 실제의 과업수행시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참여기술자의 업무범위의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1 또는 2
3.9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제출된 설계·설계감리 등 용역 참여기술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 (설계 등 용역 업체만 해당한다) -발주자와 협의하지 않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설계·설계감리 등 용역참여기술자를 변경한 경우, 50% 이상의 설계·설계감리 등 용역참여기술자를 변경한 경우(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분야의 설계·설계감리 등 용역참여기술자를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3.10	○설계감리업무의 소홀 등 (설계 감리전문회사 및 참여기술자만 해당한다) -영 제73조에 따른 설계감리의 업무범위 등과 관련하여 설계감리 업무의 소홀, 기록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설계가 필요한 경우 -설계감리의 참여기술자의 업무소홀로 인하여 설계용역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3.11	○설계의 경제성 등의 검토 소홀 (설계 감리전문회사 및 참여기술자만 해당한다) -주요 구조물의 전면적인 공법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요 구조물의 부분적인 공법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3.12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소홀 (건설안전점검기관 및 참여기술자만 해당한다)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점검 보고서를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작성한 경우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3 1 또는 2
3.13	○ 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고의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된 경우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된 경우 -고의로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 2 1

□ 「구미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징계등”이라 한다.)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기준, 별표1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1의3의 징계부가금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2.2.8>

②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개정 2011.10.26>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2.2.8>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개정 2012. 2. 8>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 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 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 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음주운전	별표 1의2과 같음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별표 1의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향응 수수	금품·향응 수수액의 4 ~ 5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3 ~ 4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2 ~ 3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1 ~ 2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유용액의 3 ~ 5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 ~ 3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1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향응 수수 또는 공금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 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향응수수액과 공금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행,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별표 2]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3조 관련)

업무의 성질 \ 업무와의 관련도	비위 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사항				
·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4	3	2	1
· 일반사항	3	1	2	4
○ 단순 반복업무				
· 중요사항	1	2	3	4
· 경미사항	1	2	3	
○ 단독행위	1	2		

※ 비고: 1, 2, 3, 4는 문책 순위를 말한다.